



## 독자 여러분의 엽서나 메일을 받습니다.

ESCO지가 독자 여러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ESCO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 잡지를 읽어보신 소감 등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특히 ESCO협회의 홈페이지(www.esco.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 란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더욱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내실 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ESCO 편집자 앞  
TEL : (02)2679-6464  
FAX : (02)2632-7566  
w3master@energycenter.co.kr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추천을 받았을 때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할 때의 차이점은

**Q.**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추천을 받았을 때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에 계약 미이행, 하자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금추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A.** 첫 번째 질문에서 '추천'의 의미는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자금 신청인)에게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은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용자 받으시는 자금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저리인데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사적 계약에서 발생된 문제로, 자금추천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31-260-4342)으로 부탁드립니다.

**Q.** 소각장에서 소각 후 버려지는 열(스팀)을 활용하여 스팀터빈발전기

를 설치하여 자체 사업장 전기 공급 및 전력거래소에 전기 판매를 하려 합니다. 위 시설 사업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 범위가 발전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 시설(배관, 전선 등)물이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력거래소에 전기 판매를 하려면 발전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업의 자금 지원은 집단에너지자금을 받아야 하는지, ESCO를 통해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질의하신 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설비 중 지원가능한 범위는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배관 및 전선 등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판단은 정확한 계약내역서와 당해년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ESCO자금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ESCO로 등록된 업체만 사용할 수 있고 추천방식도 일반 절약시설과는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신축공사에 설치되는 고효율전동기 등의 설치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국립대학인 저희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지?
2.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면 신청이 불가한지?
3. 신청이 가능하다면 접수방법이 인터넷과 일반 공문 접수도 가능한지?

**A.** 국립대학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고효율기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공공기관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상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Q.** 지하 7층으로 계획된 지하철 역사입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냉난방기를 지하에 설치해도 되는지요? 냉난방을 위하여 지하 5층에 가스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해 승강장, 대합실, 기능실 등을 냉난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A.** 결론적으로 냉온수기를 지하에 설치해도 됩니다. 냉난방기 지하 설치를 금지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중앙집중식 냉난방기의 대부분이 지하의 기계실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학교건물에 EHP로 냉난방을 할 경우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6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요? EHP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6호의 내용 중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에 해당 하는지요?

**A.**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6호의 규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적용범위)의 6호에 의하면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연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란 공기조화설비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란 냉온열원 기기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EHP 방식이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로 각 실에 공급하여 주지 않는 방식이고, 또한 냉온 열원기기에 해당되는 EHP(실외기와 실내기)가 중앙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개별 냉난방시설/개별 공조방식이므로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